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거 창 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변경)신고 수리 통보(진컨테이너**,1151-2)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변경)신고서에 대하여 검토한바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적합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변경)신고 수리 통보하오니,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1. 건축 주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좌학길 69-14 / 진컨테이너하우스주식회사
2. 건축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1151-2
3. 건축개요

건축구분	지역구역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용도
신축	계획관리지역	165.0	44.07	68.38	26.71	41.44	단독주택 (단독주택)

4. 변경사항
 - 가. 대지면적 391.0㎡
 - 나. 동수 감소(4동→1동)
 - 다. 건축면적 126.14㎡, 연면적 174.76㎡ 감소
5. 일괄처리 : 해당없음

붙임 건축(변경)신고서 1부(세움터). 끝.

거 창 군



수신자 진컨테이너하우스주식회사 귀하(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지리산리 99-1), 재무과장

주무관 **박의수** 건축민원담당 **정덕봉**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전결 2023. 5. 3.

협조자

시행 도시건축과-20229 (2023. 5. 3.) 접수

우 5013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 <http://www.geochang.go.kr>

전화번호 055-940-3614 팩스번호 055-940-3579 / dmltn4529@korea.kr / 비공개(6)

거창사람 거창으로, 대한사람 거창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선택은 거창입니다!

[별표 1의5] <개정 2016. 9.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제24조제3항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처리대상 오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2. 정화조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규격기준에 맞아야 한다.
3. 시설물의 윗부분이 밀폐된 경우에는 뚜껑(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직경 60cm 이상, 정화조의 경우 처리대상 인원이 10명 이하는 45cm 이상, 20명 이하는 50cm 이상, 30명 이하는 55cm 이상, 31명 이상은 60cm 이상)을 설치하되, 뚜껑은 밀폐할 수 있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뚜껑 밑에 격자형의 철망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3의2. 시설물의 뚜껑이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곳에 노출된 경우에는 주변과 구별될 수 있도록 색칠을 하고, 뚜껑의 상부에는 보행자 및 차량의 접근 주의를 알리는 안내문을 새겨야 한다.
4. 시설물은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천정·바닥 및 벽은 방수되어야 한다.
5. 시설물은 부식 또는 변형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은 발생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장치를 갖추어야 하되, 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오수처리시설은 유입량을 24시간 균등 배분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 저류(貯留)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시설물에는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구역(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에 설치된 1일 처리대상인원 2백명 이상인 정화조(대통령령 제23464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1일 처리대상인원 1천명 이상인 정화조 중 악취물질 제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정화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배수설비[방류조(放流槽) 또는 배수조(排水槽)를 말한다]에 공기공급장치 등 물에 녹아있는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9. 시설물은 기계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
10. 오수배관은 폐쇄,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1. 시설물은 방류수수질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

다.

12. 콘크리트 외의 재질로 시설물을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지반 및 시설물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콘크리트로 바닥에 대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의 하중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해당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에 슬라브 및 보호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을 원형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중 일정기간 동안 오수발생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연수원 등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오수가 적게 발생하는 기간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열화하여야 한다.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거창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신고 수리 통보(진컨테이너**,1151-7)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신고서에 대하여 관련법 검토결과 적합하여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건축신고 수리통보하오니 안내사항을 준수하여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1. 건축주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좌학길 69-14 / 진컨테이너하우스주식회사
2. 건축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1151-7
3. 건축개요

건축구분	지역구역	대지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연면적 (m ²)	건폐율 (%)	용적률 (%)	용도
신축	계획관리지역	165.0	44.07	68.38	26.71	41.44	단독주택 (단독주택)

4. 일괄처리 : 우수처리시설설치신고

- 붙임 1. 건축신고서(세움터) 1부.
2. 건축허가(신고) 안내사항 1부. 끝.

거창군



수신자 진컨테이너하우스주식회사 귀하(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좌학길 69-14), 재무과장, 환경과장

주무관 박의수 건축민원담당 정덕봉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전결 2023. 5. 3.

협조자

시행 도시건축과-20257 (2023. 5. 3.) 접수

우 5013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 <http://www.geochang.go.kr>

전화번호 055-940-3614 팩스번호 055-940-3579 / dmltn4529@korea.kr / 비공개(6)

거창사랑 거창으로, 대한사랑 거창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선택은 거창입니다!

【건축에 따른 안내사항】

- 건축공사 착공 전 반드시 착공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고, 대지경계 확인과 공사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신고)수리 후 2년(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일괄처리에 따른 안내사항 : 본문참조
- 착공신고시 제출서류
 -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 건축허가표지판(건축허가사항에 한함)
 - 설계도서
 - 감리계약서(해당사항 있는 경우)
 - 기관석면조사결과결과 사본(석면조사 대상건축물에 한함)
 - 재해예방전문 기술지도계약서(도급금액 1억원 이상으로 대상건축물에 한함)
 - **설계의도구현 업무 계약서(건축법 제25조제11항관련) *해당할 경우에 한함**
 - **현장관리인 배치 증명서류(건축법 제24조 제6항 관련) *해당할 경우에 한함**
 - 등록면허세(건축신고, 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 등) * 재무과 문의
 - 국민주택채권매입(해당없음)
 - 「건축사법」 제20조, 동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착공신고 시 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서를 첨부하여야 함.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물 관리법 제11조(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 등)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할 경우에 한함**
-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설계자·시공자 등을 표시한 공사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준공전에 분할, 등록전환 및 합병등 지적정리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전기공작물에 근접시는 사전 한전에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신 후 공사를 하시고,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의한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대상일경우 관련법에 따르시고 전기설비사용전검사필증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절수설비를 설치하셔야합니다.
- 상수도 인입 및 배수설비 공사시 상·하수도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는 건축물 시공전에 수도사업도 상·하수도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상수도담당 ☎940-8420, ☎하수도담당 940-8430)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설계도서 관련 변경등에 대한 문의사항(행정과 055-940-3204)

- 타법령에 저촉될시는 즉시 타법령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후 공사를 하십시오
- 단열재, 창 및 문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시고, 사용승인시 납품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유해, 위험의 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시 사용승인 전까지 분할 등 지적정리하시고, 사용승인신청 시 지목변경 대상인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경상남도 시책 사업인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경사지붕에 밝은 색상으로 시공하여 주십시오.
- 건축공사 변경사항을 있을시 건축변경허가를 득하신 후 공사 진행하시고, 완료 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은 후 건축물 사용이 가능하며,
-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 비산먼지발생사업 및 특정공사사전 신고 대상여부 검토 후 대상일 경우 사업추진 전에 환경과로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문의처: 환경과 055-940-3496)
- 고용 산재보험 안내 : 별첨 (문의사항:근로복지공단 진주시사 ☎055-760-0120-3)
- 도로명 주소 관련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준공 전 건물번호부여 신청 및 건물번호판 부착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단독주택에 대하여 수동식소화기(능력단위 2단위 이상)는 총별 1개소이상설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계도면에 의거 설치하시고, 준공시 사진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거 LPG가스시설설치시 안전검사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 경남 서부지사 ☎055-746-0019)
-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확인하시고 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재무과☎940-3272)
- 사업시행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이 되면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문화관광과로 신고하기 바랍니다.
- 우리군에서는 대규모 복합 인.허가 사업장 사전점검제를 실시하오니, 사용검사 신청1개월 전에 신청하시며, 복합민원 담당자와 시공자, 감리자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적극적인 활용 부탁드립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 창 군 수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거창군



수신 도시건축과장
(경유)

제목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수리 통보(진컨테이너**)

1. 도시건축과-17218, 17219호(2023. 4. 19.)와 관련입니다.
2.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서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이행사항을 선행조건으로 「하수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각 설치신고 수리하오니, 아래 준수사항을 신고인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신고 수리사항

신고인	설치장소	건물용도	연면적(m ²)	오수처리시설		비고
				처리방법	시설용량	
진컨테이너 하우스주식 회사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1151-7	단독주택	68.38	NBM접촉폭기법	3m ³ /일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1151-8	단독주택	68.38	NBM접촉폭기법	3m ³ /일	

나. 설치 시 준수사항

- 1) 설계·시공 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2) 설치를 완료한 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
-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 규모 또는 처리용량, 구조의 변경, 본체의 교체.

붙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1부. 끝.

환경과

주무관 강민경 수질관리담당 신동일 환경과장 2023. 4. 21. 관철식

협조자

시행 환경과-19017 (2023. 4. 21.) 접수 도시건축과-18147 (2023. 4. 22.)

우 5013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 <http://www.geochang.go.kr>

전화번호 055-940-3514 팩스번호 055-940-3759 / kmk38@korea.kr / 비공개(6)

거창사람 거창으로, 대한사람 거창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선택은 거창입니다!

[별표 1의5] <개정 2016. 9.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제24조제3항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처리대상 오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2. 정화조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규격기준에 맞아야 한다.
3. 시설물의 윗부분이 밀폐된 경우에는 뚜껑(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직경 60cm 이상, 정화조의 경우 처리대상 인원이 10명 이하는 45cm 이상, 20명 이하는 50cm 이상, 30명 이하는 55cm 이상, 31명 이상은 60cm 이상)을 설치하되, 뚜껑은 밀폐할 수 있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뚜껑 밑에 격자형의 철망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3의2. 시설물의 뚜껑이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곳에 노출된 경우에는 주변과 구별될 수 있도록 색칠을 하고, 뚜껑의 상부에는 보행자 및 차량의 접근 주의를 알리는 안내문을 새겨야 한다.
4. 시설물은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천정·바닥 및 벽은 방수되어야 한다.
5. 시설물은 부식 또는 변형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은 발생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장치를 갖추어야 하되, 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오수처리시설은 유입량을 24시간 균등 배분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 저류(貯留)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시설물에는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구역(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에 설치된 1일 처리대상인원 2백명 이상인 정화조(대통령령 제23464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1일 처리대상인원 1천명 이상인 정화조 중 악취물질 제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정화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배수설비[방류조(放流槽) 또는 배수조(排水槽)를 말한다]에 공기공급장치 등 물에 녹아있는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9. 시설물은 기계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
10. 오수배관은 폐쇄,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1. 시설물은 방류수수질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

다.

12. 콘크리트 외의 재질로 시설물을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지반 및 시설물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콘크리트 바닥에 대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의 하중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해당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에 슬라브 및 보호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을 원형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중 일정기간 동안 오수발생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연수원 등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오수가 적게 발생하는 기간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열화하여야 한다.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거창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신고 수리 통보(진컨테이너**,1151-8)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신고서에 대하여 관련법 검토결과 적합하여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건축신고 수리통보하오니 안내사항을 준수하여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1. 건축주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좌학길 69-14 / 진컨테이너하우스주식회사
2. 건축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1151-8
3. 건축개요

건축구분	지역구역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용도
신축	계획관리지역	165.0	44.07	68.38	26.71	41.44	단독주택 (단독주택)

4. 일괄처리 : 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

- 붙임 1. 건축신고서(세움터) 1부,
2. 건축허가(신고) 안내사항 1부. 끝.

거창군



수신자 진컨테이너하우스주식회사 귀하(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좌학길 69-14), 재무과장, 환경과장

주무관 박의수 건축민원담당 점덕봉 도시건축과장 전결 2023. 5. 3. 장봉기

협조자

시행 도시건축과-20258 (2023. 5. 3.) 접수

우 5013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 <http://www.geochang.go.kr>

전화번호 055-940-3614 팩스번호 055-940-3579 / dmltn4529@korea.kr / 비공개(6)

거창사람 거창으로, 대한사람 거창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선택은 거창입니다!

【건축에 따른 안내사항】

- 건축공사 착공 전 반드시 착공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고, 대지경계 확인과 공사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신고)수리 후 2년(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일괄처리에 따른 안내사항 : 본문참조**
- **착공신고시 제출서류**
 -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 건축허가표지판(건축허가사항에 한함)
 - 설계도서
 - 감리계약서(해당사항 있는 경우)
 - 기관석면조사결과결과 사본(석면조사 대상건축물에 한함)
 - 재해예방전문 기술지도계약서(도급금액 1억원 이상으로 대상건축물에 한함)
 - **설계의도구현 업무 계약서(건축법 제25조제11항관련) *해당할 경우에 한함**
 - **현장관리인 배치 증명서류(건축법 제24조 제6항 관련) *해당할 경우에 한함**
 - 등록면허세(건축신고, 우수처리시설설치신고 등) * 재무과 문의
 - 국민주택채권매입(해당없음)
 - 「건축사법」 제20조, 동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착공신고 시 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서를 첨부하여야 함.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물 관리법 제11조(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 등)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할 경우에 한함**
-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설계자·시공자 등을 표시한 공사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준공전에 분할, 등록전환 및 합병등 지적정리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전기공작물에 근접시는 사전 한전에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신 후 공사를 하시고,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의한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대상일경우 관련법에 따르시고 전기설비사용전검사필증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절수설비를 설치하셔야합니다.
- 상수도 인입 및 배수설비 공사시 상·하수도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는 건축물 시공전에 수도사업도 상·하수도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상수도담당 ☎940-8420, ☎하수도담당 940-8430)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설계도서 관련 변경등에 대한 문의사항(행정과 055-940-3204)

- 타법령에 저촉될시는 즉시 타법령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후 공사를 하십시오
- 단열재, 창 및 문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시고, 사용승인시 납품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유해, 위험의 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시 사용승인 전까지 분할 등 지적정리하시고, 사용승인신청 시 지목변경 대상인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경상남도 시책 사업인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경사지붕에 밝은 색상으로 시공하여 주십시오.
- 건축공사 변경사항을 있을시 건축변경허가를 득하신 후 공사 진행하시고, 완료 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은 후 건축물 사용이 가능하며,
-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 비산먼지발생사업 및 특정공사사전 신고 대상여부 검토 후 대상일 경우 사업추진 전에 환경과로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문의처: 환경과 055-940-3496)
- 고용 산재보험 안내 : 별첨 (문의사항:근로복지공단 진주시사 ☎055-760-0120-3)
- 도로명 주소 관련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준공 전 건물번호부여 신청 및 건물번호판 부착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단독주택에 대하여 수동식소화기(능력단위 2단위 이상)는 총별 1개소이상설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계도면에 의거 설치하시고, 준공시 사진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거 LPG가스시설설치시 안전검사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 경남 서부지사 ☎055-746-0019)
-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확인하시고 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재무과☎940-3272)
- 사업시행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이 되면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문화관광과로 신고하기 바랍니다.
- 우리군에서는 대규모 복합 인.허가 사업장 사전점검제를 실시하오니, 사용검사 신청1개월 전에 신청하시며, 복합민원 담당자와 시공자, 감리자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적극적인 활용 부탁드립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 장 군 수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거 창 군



수신 도시건축과장
(경유)

제목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수리 통보(진컨테이너**)

1. 도시건축과-17218, 17219호(2023. 4. 19.)와 관련입니다.
2.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서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이행사항을 선행조건으로 「하수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각 설치신고 수리하오니, 아래 준수사항을 신고인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신고 수리사항

신고인	설치장소	건물용도	연면적(m ²)	오수처리시설		비 고
				처리방법	시설용량	
진컨테이너 하우스주식 회사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1151-7	단독주택	68.38	NBM접촉폭기법	3m ³ /일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1151-8	단독주택	68.38	NBM접촉폭기법	3m ³ /일	

나. 설치 시 준수사항

- 1) 설계·시공 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2) 설치를 완료한 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
-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 규모 또는 처리용량, 구조의 변경, 본체의 교체.

붙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1부. 끝.

환 경 과

주무관 강민경 수질관리담당 신동일 환경과장 2023. 4. 21. 관철식

협조자

시행 환경과-19017 (2023. 4. 21.) 접수 도시건축과-18147 (2023. 4. 22.)

우 5013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 <http://www.geochang.go.kr>

전화번호 055-940-3514 팩스번호 055-940-3759 / kmk38@korea.kr / 비공개(6)

거창사랑 거창으로, 대한사랑 거창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선택은 거창입니다!

[별표 1의5] <개정 2016. 9.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4조제3항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처리대상 오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2. 정화조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규격기준에 맞아야 한다.
3. 시설물의 윗부분이 밀폐된 경우에는 뚜껑(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직경 60cm 이상, 정화조의 경우 처리대상 인원이 10명 이하는 45cm 이상, 20명 이하는 50cm 이상, 30명 이하는 55cm 이상, 31명 이상은 60cm 이상)을 설치하되, 뚜껑은 밀폐할 수 있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뚜껑 밑에 격자형의 철망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3의2. 시설물의 뚜껑이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곳에 노출된 경우에는 주변과 구별될 수 있도록 색칠을 하고, 뚜껑의 상부에는 보행자 및 차량의 접근 주의를 알리는 안내문을 새겨야 한다.
4. 시설물은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천정·바닥 및 벽은 방수되어야 한다.
5. 시설물은 부식 또는 변형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은 발생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장치를 갖추어야 하되, 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오수처리시설은 유입량을 24시간 균등 배분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 저류(貯留)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시설물에는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구역(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에 설치된 1일 처리대상인원 2백명 이상인 정화조(대통령령 제23464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1일 처리대상인원 1천명 이상인 정화조 중 악취물질 제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정화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배수설비[방류조(放流槽) 또는 배수조(排水槽)를 말한다]에 공기공급장치 등 물에 녹아있는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9. 시설물은 기계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
10. 오수배관은 폐쇄,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1. 시설물은 방류수수질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

다.

12. 콘크리트 외의 재질로 시설물을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지반 및 시설물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콘크리트로 바닥에 대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의 하중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해당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에 슬라브 및 보호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을 원형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중 일정기간 동안 오수발생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연수원 등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오수가 적게 발생하는 기간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화하여야 한다.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거창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신고 수리 통보(진컨테이너**)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신고서에 대하여 관련법 검토결과 적합하여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건축신고 수리통보하오니 안내사항을 준수하여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 1. 건축주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좌학길 69-14 / 진컨테이너하우스주식회사
- 2. 건축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1151-9 외 1필지
- 3. 건축개요

건축구분	지역구역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용도
신축	계획관리지역	115.0	38.0	38.0	33.04	33.04	제2종근린생활시설 (골프연습장)

- 4. 일괄처리 : 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

- 붙임 1. 건축신고서(세움터) 1부.
- 2. 건축허가(신고) 안내사항 1부. 끝.

거창군



수신자 진컨테이너하우스주식회사 귀하(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좌학길 69-14), 재무과장, 환경과장

주무관 박의수 건축민원담당 정덕봉 도시건축과장 전결 2023. 6. 27. 장봉기

협조자

시행 도시건축과-29545 (2023. 6. 27.) 접수

우 5013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 <http://www.geochang.go.kr>

전화번호 055-940-3614 팩스번호 055-940-3579 / dmltn4529@korea.kr / 비공개(6)

거창사람 거창으로, 대한사람 거창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선택은 거창입니다!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

·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

건축구분	신축	신고번호	2023-도시건축과-신축신고-81 (2023-5470188-1201-81)		
건축주	진컨테이너하우스주식회사				
대지위치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지번	1151-9외 1필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115 m ²				
건축물명	웅양면 신촌리 1151-9	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실내골프연습장)		
건축면적	38 m ²	건폐율	33.04 %		
연면적 합계	38 m ²	용적률	33.04 %		

등 고유번호	등 명칭 및 번호	연면적(m ²)	등 고유번호	등 명칭 및 번호	연면적(m ²)
1	주건축물제1등	38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에 대하여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을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교부합니다.

2023년 06월 27일

거창군수



#첨부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

건축주

관련지번	지 목
경상남도 거창군 용양면 신촌리 1151 - 10	대

【건축에 따른 안내사항】

- 건축공사 착공 전 반드시 착공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고, 대지경계 확인과 공사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신고)수리 후 2년(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일괄처리에 따른 안내사항 : 본문참조**
- **착공신고시 제출서류**
 -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 건축허가표지판(건축허가사항에 한함)
 - 설계도서
 - 감리계약서(해당사항 있는 경우)
 - 기관석면조사결과결과 사본(석면조사 대상건축물에 한함)
 - 재해예방전문 기술지도계약서(도급금액 1억원 이상으로 대상건축물에 한함)
 - **설계의도구현 업무 계약서(건축법 제25조제11항관련) *해당할 경우에 한함**
 - **현장관리인 배치 증명서류(건축법 제24조 제6항 관련) *해당할 경우에 한함**
 - 등록면허세(건축신고, 우수처리시설설치신고) * 재무과 문의
 - 국민주택채권매입(해당없음)
 - 「건축사법」 제20조, 동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착공신고 시 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서를 첨부하여야 함.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물 관리법 제11조(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 등)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할 경우에 한함**
-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설계자·시공자 등을 표시한 공사표지판을 주인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준공전에 분할, 등록전환 및 합병등 지적정리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전기공작물에 근접시는 사전 한전에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신 후 공사를 하시고,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대상일경우 관련법에 따르시고 전기설비사용전검사필증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절수설비를 설치하셔야합니다.
- 상수도 인입 및 배수설비 공사시 상·하수도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는 건축물 시공전에 수도사업도 상·하수도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상수도담당 ☎940-8420, ☎하수도담당 940-8430)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설계도서 관련 변경등에 대한 문의사항(행정과 055-940-3204)

- 타법령에 저촉될시는 즉시 타법령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후 공사를 하십시오
- 단열재, 창 및 문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시고, 사용승인시 납품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유해, 위험의 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시 사용승인 전까지 분할 등 지적정리하시고, 사용승인신청 시 지목변경 대상인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경상남도 시책 사업인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경사지붕에 밝은 색상으로 시공하여 주십시오.
- 건축공사 변경사항을 있을시 건축변경허가를 득하신 후 공사 진행하시고, 완료 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은 후 건축물 사용이 가능하며,
-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 비산먼지발생사업 및 특정공사사전 신고 대상여부 검토 후 대상일 경우 사업추진 전에 환경과로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문의처: 환경과 055-940-3496)
- 고용 산재보험 안내 : 별첨 (문의사항: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 ☎055-760-0120-3)
- 도로명 주소 관련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준공 전 건물번호부여 신청 및 건물번호판 부착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단독주택에 대하여 수동식소화기(능력단위 2단위 이상)는 층별 1개소이상설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계도면에 의거 설치하시고, 준공시 사진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거 LPG가스시설설치시 안전검사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 경남 서부지사 ☎055-746-0019)
-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확인하시고 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재무과☎940-3272)
- 사업시행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이 되면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문화관광과로 신고하기 바랍니다.
- 우리군에서는 대규모 복합 인.허가 사업장 사전점검제를 실시하오니, 사용검사 신청1개월 전에 신청하시며, 복합민원 담당자와 시공자, 감리자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적극적인 활용 부탁드립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 장 군 수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거창군



수신 도시건축과장
(경유)

제목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수리 알림(진컨테이너**)

1. 도시건축과-27549호(2023. 6. 15.)와 관련입니다.
2.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서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이행사항을 선행조건으로 「하수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치신고 수리하오니, 아래 준수사항을 신고인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설치장소	건물용도	연면적(m ²)	오수처리시설	
				처리방법	시설용량
진컨테이너 하우스주식 회사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1151-9	제2종근생 (골프연습장)	38.0	현수미생물 접촉폭기방법	3m ³ /일

3. 설치 시 준수사항

- 가. 설계·시공 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함.
- 나. 설치를 완료한 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함.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
- 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 규모 또는 처리용량, 구조의 변경, 본체의 교체.

붙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1부. 끝.

환 경 과 관청장 박의수

주무관 강민경 수질관리담당 신동일 환경과장 2023. 6. 21. 관철식

협조자

시행 환경과-30052 (2023. 6. 21.) 접수 도시건축과-28705 (2023. 6. 21.)

우 5013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 <http://www.geochang.go.kr>

전화번호 055-940-3514 팩스번호 055-940-3759 / kmk38@korea.kr / 비공개(6)

거창사랑 거창으로, 대한사랑 거창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선택은 거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제24조제3항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처리대상 오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2. 정화조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규격기준에 맞아야 한다.
3. 시설물의 윗부분이 밀폐된 경우에는 뚜껑(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직경 60cm 이상, 정화조의 경우 처리대상 인원이 10명 이하는 45cm 이상, 20명 이하는 50cm 이상, 30명 이하는 55cm 이상, 31명 이상은 60cm 이상)을 설치하되, 뚜껑은 밀폐할 수 있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뚜껑 밑에 격자형의 철망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3의2. 시설물의 뚜껑이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곳에 노출된 경우에는 주변과 구별될 수 있도록 색칠을 하고, 뚜껑의 상부에는 보행자 및 차량의 접근 주의를 알리는 안내문을 새겨야 한다.
4. 시설물은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천정·바닥 및 벽은 방수되어야 한다.
5. 시설물은 부식 또는 변형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은 발생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장치를 갖추어야 하되, 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오수처리시설은 유입량을 24시간 균등 배분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 저류(貯留)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시설물에는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구역(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에 설치된 1일 처리대상인원 2백명 이상인 정화조(대통령령 제23464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1일 처리대상인원 1천명 이상인 정화조 중 악취물질 제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정화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배수설비[방류조(放流槽) 또는 배수조(排水槽)를 말한다]에 공기공급장치 등 물에 녹아있는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9. 시설물은 기계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
10. 오수배관은 폐쇄,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1. 시설물은 방류수수질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2. 콘크리트 외의 재질로 시설물을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가. 지반 및 시설물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콘크리트로 바닥에 대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의 하중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해당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에 슬래브 및 보호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을 원형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중 일정기간 동안 오수발생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연수원 등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오수가 적게 발생하는 기간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열화하여야 한다.



고령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신고필증 교부(진*테이너하우스주식회사-C부지)

1.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신고 신청에 대하여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에 따른 건축신고 필증을 교부하오니 공과금 납부(문의 재무과 ☎950-6125) 후 찾으시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신고 내역

대지위치	지역	구조	용도	연면적	건축주	비고
개진면 반운리 276 (대/ 97㎡)	계획관리	경량철골	단독주택	19.83㎡	진컨테이너하우스 주식회사 (C부지)	신축 (1동)

나. 의제사항 : 배수설비 설치신고,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도로점용허가

다. 검토사항 : 문화재 관련법 검토

라. 공 과 금 : 건축면허세 9,000원, 개발행위면허세 9,000원, 개발행위이행보증금 19,160,000원

마. 주요안내사항

1) 건축관련 안내사항

- 진·출입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받은 대지는 사용신청 전 적법하게 분할하여 도로로 지목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착공신고시 구조안전확인서 및 구조안전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재보험(모든 건설공사) 및 고용보험(연면적 합계 100㎡ 초과) 의무가입 대상이며 착공시 제출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1588-0075)
- 지적 경계측량을 실시 한 후 측량말목은 사용승인 시까지 이동 없이 보존하여야 하며 측량말목 훼손으로 그 경계가 불분명 할 경우 경계복원측량 등을 하여야 합니다.
-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규정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미설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사용전에 건축물의 사용승인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이전에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100만원이하 과태료처분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 단열재, 창호(유리 포함), 절수설비·기기 및 하수도용 자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규격으로 KS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신청시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건축신고의 효력은 없어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불임안내문 참고바랍니다.

2) 문화재관련 안내사항

- 공사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유물 등이 발견되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즉시 공사중지 및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신고조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3) 도로관련 안내사항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민원인은 도로점용 부분 공사 착공 전 「도로교통법」 제69조 (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에 따라 경찰서에 도로공사신고를 하여야합니다.

2. 관련부서 및 면장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건축안내문 1부.
 2.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홍보문 1부.
 3. 개발행위허가 조건 및 안내문 1부.
 4. 도로점용 허가증 1부.
 5. 배수설비 설치조건 1부.
 6. 절수설비 및 기기설치 안내문 1부.
 7. 고용,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착공신고 시) 1부.
 8. 고용, 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안내문(인허가 시) 1부. 끝.

고 령 군 수

수신자 진컨테이너하우스주식회사 귀하, 민원과장, 재무과장, 문화유산과장, 환경과장, 건설과장, 개진면장

주무관 강병수 건축허가팀장 배효국 건축허과장 전결 2022. 6. 22.
이해봉

협조자 주무관 강선희 주무관 김찬수

시행 건축허과과-29216 접수

우 40138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도시건축과 / <http://www.goryeong.go.kr>

전화번호 054-950-6726 팩스번호 054-950-6369 / rkdqudtn7645@korea.kr / 비공개(6)

적극행정, 고령의 내일을 위한 약속입니다.



고령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신고필증 교부(진*테이너하우스주식회사-B부지)

1.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신고 신청에 대하여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에 따른 건축신고 필증을 교부하오니 공과금 납부(문의 재무과 ☎950-6125) 후 찾으시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신고 내역

대지위치	지역	구조	용도	연면적	건축주	비고
개진면 반운리 276 (대/ 127㎡)	계획관리	경량철골	단독주택	19.83㎡	진컨테이너하우스 주식회사 (B부지)	신축 (1동)

나. 의제사항 : 배수설비 설치신고,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다. 검토사항 : 문화재 관련법 검토

라. 공 과 금 : 건축면허세 9,000원, 개발행위면허세 9,000원, 개발행위이행보증금 5,860,000원

마. 주요안내사항

1) 건축관련 안내사항

- 진·출입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받은 대지는 사용신청 전 적법하게 분할하여 도로로 지목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착공신고시 구조안전확인서 및 구조안전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재보험(모든 건설공사) 및 고용보험(연면적 합계 100㎡ 초과) 의무가입 대상이며 착공시 제출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1588-0075)
- 지적 경계측량을 실시 한 후 측량말목은 사용승인 시까지 이동 없이 보존하여야 하며 측량말목 훼손으로 그 경계가 불분명 할 경우 경계복원측량 등을 하여야 합니다.
-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규정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미설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사용전에 건축물의 사용승인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이전에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100만원이하 과태료처분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 단열재, 창호(유리 포함), 절수설비·기기 및 하수도용 자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규격으로 KS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신청시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건축신고의 효력은 없어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불임안내문 참고바랍니다.

2) 문화재관련 안내사항

- 공사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유물 등이 발견되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즉시 공사중지 및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신고조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2. 관련부서 및 면장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건축안내문 1부.
 2.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홍보문 1부.
 3. 개발행위허가 조건 및 안내문 1부.
 4. 배수설비 설치조건 1부.
 5. 절수설비 및 기기설치 안내문 1부.
 6. 고용,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착공신고 시) 1부.
 7. 고용, 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안내문(인허가 시) 1부. 끝.

고 령 군 수

수신자 진컨테이너하우스주식회사 귀하, 민원과장, 재무과장, 문화유산과장, 환경과장, 개진면장

주무관 강병수 건축허가팀장 배효국 건축허가과장 전결 2022. 6. 22.
이해봉

협조자 주무관 강선희 주무관 김찬수

시행 건축허가과-29215 접수

우 40138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도시건축과 / <http://www.goryeong.go.kr>

전화번호 054-950-6726 팩스번호 054-950-6369 / rkdqudtn7645@korea.kr / 비공개(6)

적극행정, 고령의 내일을 위한 약속입니다.



고령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신고필증 교부(진*테이너하우스주식회사-A부지)

1.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신고 신청에 대하여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에 따른 건축신고 필증을 교부하오니 공과금 납부(문의 재무과 ☎950-6125) 후 찾으시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신고 내역

대지위치	지역	구조	용도	연면적	건축주	비고
개진면 반운리 276 (대/ 127㎡)	계획관리	경량철골	단독주택	19.83㎡	진컨테이너하우스 주식회사 (A부지)	신축 (1동)

나. 의제사항 : 배수설비 설치신고,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다. 검토사항 : 문화재 관련법 검토

라. 공 과 금 : 건축면허세 9,000원, 개발행위면허세 9,000원, 개발행위이행보증금 5,938,000원

마. 주요안내사항

1) 건축관련 안내사항

- 진·출입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받은 대지는 사용신청 전 적법하게 분할하여 도로 지목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착공신고시 구조안전확인서 및 구조안전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재보험(모든 건설공사) 및 고용보험(연면적 합계 100㎡ 초과) 의무가입 대상이며 착공시 제출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1588-0075)
- 지적 경계측량을 실시 한 후 측량말목은 사용승인 시까지 이동 없이 보존하여야 하며 측량말목 훼손으로 그 경계가 불분명 할 경우 경계복원측량 등을 하여야 합니다.
-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규정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미설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사용전에 건축물의 사용승인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이전에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100만원이하 과태료처분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 단열재, 창호(유리 포함), 절수설비·기기 및 하수도용 자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규격으로 KS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신청시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건축신고의 효력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안내문 참고바랍니다.

2) 문화재관련 안내사항

- 공사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유물 등이 발견되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즉시 공사중지 및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신고조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2. 관련부서 및 면장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건축안내문 1부.
 2.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홍보문 1부.
 3. 개발행위허가 조건 및 안내문 1부.
 4. 배수설비 설치조건 1부.
 5. 절수설비 및 기기설치 안내문 1부.
 6. 고용,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착공신고 시) 1부.
 7. 고용, 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안내문(인허가 시) 1부. 끝.

고령군수

수신자 진컨테이너하우스주식회사 귀하, 민원과장, 재무과장, 문화유산과장, 환경과장, 개진면장

주무관 강병수 건축허가팀장 배효국 건축허가과장 전결 2022. 6. 22.
이해봉

협조자 주무관 강선희 주무관 김찬수

시행 건축허가과-29214 접수

우 40138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도시건축과 / <http://www.goryeong.go.kr>

전화번호 054-950-6726 팩스번호 054-950-6369 / rkdqudtn7645@korea.kr / 비공개(6)

적극행정, 고령의 내일을 위한 약속입니다.